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7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정진욱·허성무·채현일

민형배 · 양부남 · 이개호

조인철 • 박지원 • 안도걸

황명선 • 박해철 • 강준현

문금주 · 오세희 · 박희승

박용갑・김 유・장종태

전진숙 · 정일영 · 안태준

의원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해야 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입법자인 국회에 기속 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종 국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일반 법률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서 입법지연 및 입법공백이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됨.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 도록 개선입법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안
		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공청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u> <신 설></u>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공
		청회가 개최된 후 120일 이내
		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마쳐
		<u>야 한다.</u>